

#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



## 사업 목적

-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,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



## 지원 절차



## 신청 접수 기간

- 2019. 7. 8.(월) ~ 11. 29.(금)



## 보장 기간

- 계약이후 2년(1회 연장 가능, 최대 4년)

1) 임대차계약 체결 **이전** 신청접수 시 : 계약체결 시 區 복지과 합동하여 특약기입  
임대차계약 체결 **이후(보증금 지불 이전)** 신청접수 시 :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특약조건 명시



## 신청 대상

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-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
  - 무주택 세대 구성원
  - 가구원 2인 이상(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)
  -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
  -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



## 지원 방법

- 지원액 : 가구 당 3,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
  - ※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,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방법 : 임대차 계약 체결 확인 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(종료 후 지원금 회수)
- 선정방법 : 신청서 검토 후 조건 충족자 선정
- 결과통보 : 서면, 유선을 통해 안내



## 제출서류 및 신청 장소

- 제출서류
  -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(區 복지과, 洞 행정복지센터 비치)
  -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(區 복지과, 洞 행정복지센터 비치)
  - 임대차 계약서 원본(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, 특약조건 명시)
- 신청 장소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


## 제외 대상

-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
  -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
  -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
  -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
문의 ☎ 760-7874(중구청 복지과)